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215 발의연월일: 2024. 9. 24.

발 의 자:이상휘·최형두·이헌승

구자근 • 박성민 • 박준태

서일준 • 신성범 • 김형동

김태호 · 임종득 · 김성원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, 스토킹, 언어폭력, 따돌림 등을 통해 특정 인의 신체,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디지털 폭력이 최근 사이 버불링, 사이버렉카 등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심각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음.

2023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,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각각 40.8%, 8.0%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, 연예인·운동선수·BJ 등 대중의 관심을 많이 받는 유명인 들이 인터넷 악성 댓글(악플)로 고통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삭제·임시조치, 심의를 통한 차단, 명예훼손 분쟁조정 등의 수단을 구비하고 있으나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 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, 법률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삭제·임시조치 제도 개선, 관련기관 확대·개편 및 교육 강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디지털 폭력을 예방·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정보통신망 내 정보게재자의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신설하고, 이의제기가 있을 시 해당 건을 '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'로 이관할 뿐만 아니라 직권조정절차를 개시하게 하며, 삭제·임시조치대상 정보를 모욕으로까지 확대함(안 제44조 제1항, 안 제44조의2, 안 제44조의3 등).
- 나. 기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·개편하여 분쟁조정 외에 게재된 정보 삭제 적부에 대한 직권조정 결정 등을 담당함(안 제44조의6, 안 제44조의10부터 제44조의16까지).
- 다. 방송통신위원회가 디지털 윤리교육 콘트롤타워로서 관련 시책을 수립, 전국 초·중·고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디지털 교육을 의무화함(안 제44조의17 신설).
- 라.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다양한 피해를 상담하고 있는 온라인피해365센터와 관련하여 법률에 센터 설치 근거 및 기능 확대 등을 명시하여 보다 효과적으로원스톱 구제가 가능하도록함(안 제44조의18 신설).

법률 제 호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1항 중 "침해 또는 명예훼손"을 "침해, 명예훼손, 모욕"으로 한다.

제44조의2제1항 전단 중 "명예훼손"을 "명예훼손, 모욕"으로, "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"를 "삭제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삭제등을"을 "삭제를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삭제등을"을 "삭제를"로, "삭제・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"를 "그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"로, "알려야"를 "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"로 하고, 같은 항 후단 중 "필요한 조치"를 "임시조치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필요한 조치"를 "정보의 삭제요청, 임시조치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
- 2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

- 3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 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
- ④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12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.
-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정보가 유통 또는 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면제한다. 다만,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
- 1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
-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
 된다는 사실
- 3.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

-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- 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 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
제44조의3제1항 중 "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"을 "침해, 명예훼손, 모욕 등에 해당하여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수 있도록 하여야한다.
- 1.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
- 2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 및 절차
- 3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 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
-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,

제5항,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

제44조의6제1항 중 "침해 또는 명예훼손"을 "침해, 명예훼손, 모욕"으로 하고, 같은 항 및 제2항 중 "명예훼손 분쟁조정부"를 각각 "온라인 분쟁조정위원회"로 한다.

제44조의10의 제목 "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"를 "(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- 1. 조정 대상: 이용자 간 분쟁,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
- 2.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:
 - 가.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 된 분쟁
 - 나.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 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쟁
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,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동의를 얻

- 어 위촉한다.
- 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2. 판사 · 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3.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 람
- 4.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.
-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심위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사항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①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, 주심위원 및 전문 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장에 제44조의11부터 제44조의1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4조의11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 조정사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된다.
 - 1.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 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 - 2.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
 - 3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
 - 4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 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.
 -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·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.
- 제44조의12(분쟁조정의 절차) ① 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 -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

실을 다른 당사자,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,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의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13(분쟁조정 후 통지 등)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

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(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조정이 성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· 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 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
- 제44조의14(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)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(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)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 - 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 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.
- 제44조의15(조정의 종결) ① 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.

- 1.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
- 2.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
- 3.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
- 4.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.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
- 6.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
-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44조의16(임시조치에 대한 직권조정)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이하 "직권조정결정"이라한다)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로 본다.
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

- 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제44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.
-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 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하며,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, 위 직권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.
-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이 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
- 제44조의17(디지털윤리교육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"디지털윤리교육"이라 한다)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 매년

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1.「초・중등교육법」・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지원할 수 있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,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· 방법 및 횟수,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, 공표, 필요한 조치, 교육 지 원,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
- 제44조의18(온라인피해지원센터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피해(이하 "온라인 피해"라 한다)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라인피해지원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 -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원
 - 2.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
 - 3.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

- 4.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 · 홍보
- 5.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 · 실태조사 및 국제협력
- 6. 온라인 피해상담 피해구제 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 운영
- 7.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8.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
- ③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센터의 업무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4조의18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분쟁조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의10제1항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소관 사무는 조정위원회가 승계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	제44조(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
호) ① 이용자는 사생활 <u>침해</u>	호) ① 침해,
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	명예훼손, 모욕
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	
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.	
②・③ (생 략)	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	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
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	①
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	
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	명예훼손, 모
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	<u></u>
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	
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	
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	
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	- <u>삭제</u>
게재(이하 "삭제등"이라 한다)	
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<u>삭</u>	<u>삭제</u>
제등을 요청하는 자(이하 이 조	밀
에서 "신청인"이라 한다)는 문	
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그 처리	
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	
을 지정할 수 있으며, 해당 정보	
를 게재한 자(이하 이 조에서	

"정보게재자"라 한다)는 문자메시지,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.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<u>삭제등</u>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<u>삭제</u>·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<u>알려야</u> 한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<u>필요한</u>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<u><신</u> 설> <신 설>

<신 설>

- ③ (생략)
-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 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

②
삭제를
<u></u>
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
카타귀노 고취/시키 "이 기고취"
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
<u> 라 한다)</u>
라 한다)
<u>라 한다)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</u>
<u>라 한다)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</u> <u>하여야</u> <u>임시조치</u>
<u>라 한다)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</u> <u>하여야</u> <u>임시조치</u>
<u>라 한다)</u>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</u> <u>하여야</u> <u>임시조치</u>

-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
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방법
 및 절차
- 3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다는 사실
- ③ (현행과 같음)
- ①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 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제7항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

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(이하 "임시조치"라 한다)를 할 수 있 다.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.

-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.
-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 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 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 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.

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 의제기가 있는 때에는 제44조의 12에 따른 직권조정절차가 종료 되는 날까지로 한다.

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 ⑤ ----- 정 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·절차 | 보의 삭제요청, 임시조치-----

>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 신이 운영·관리하는 정보통신 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 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 에게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통 지한 경우에는 그 정보가 유통 또는 접근 차단됨으로 인하여 신청인 또는 정보게재자에게 발 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의 배상 책임을 면 제한다. 다만,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신 이 운영・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다

<신 설>

른 사람의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삭제 요청을 받기 전까지 발생 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 다.

- ⑦ 정보게재자는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 내에 임시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한다.
- 1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사실
 2.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
 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
 에 회부된다는 사실
- 3.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의 직 권조정절차
- ⑧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제44조의12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

<신 <u>설></u>

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제44조의3(임의의 임시조치) ① -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 이 운영 · 관리하는 정보통신망 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 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 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 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 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 다.

인분쟁조정위원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.

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 른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가 없 는 경우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이 만료한 후 해당 정보를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.

해, 명예훼손, 모욕 등에 해당하 여 -----

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 1항에 따른 임의의 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정보게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임시조치 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 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1. 임시조치를 한 사실 및 기간

제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)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민·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이용자의 정보(민·형사상의 소를제기하기 위한 성명·주소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정보를 말한다)를 제공하도록청구할수 있다.

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

2.	な	보	게재.	자의	0]	의 7	네기	방`	법
1	및	절기	₹ } -						

- 3. 정보게재자의 이의제기 시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 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 에 회부된다는 사실
-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, 제4항, 제5항,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.

 네44조의6(이용자 정보의 제공청
구) ①
침해, 명예훼손, 모욕
온라인분쟁조정
위원회
② 오라이브재즈저의의히

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 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44조의10(명예훼손 분쟁조정부) 제44조의10(온라인분쟁조정위원 ①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 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 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 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.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③ • ④ (현행과 같음)

회)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효율적으 로 조정하기 위하여 40명 이하 의 위원으로 구성된 온라인분쟁 조정위원회(이하 "조정위원회" 라 한다)를 설치하고, 위원 중 3 분의 2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.

- 1. 조정 대상: 이용자 간 분쟁, 이용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 공자 간 분쟁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분쟁
- 2. 다음 각 목의 조정 내용:
 - 가.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
 - 나. 제44조의2제8항에 따른 임시조치와 관련된 분쟁

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 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 다.

③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의2제2항, 제35조부터 제39조까

<u>다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</u> 하는 분쟁

-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송 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 하며,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 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1.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 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 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2. 판사・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
- 3.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
- 4. 그 밖에 정보통신에 관한 지 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③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가 만료된

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
"분쟁조정위원회"는 "심의위원
회"로, "개인정보와 관련한 분
쟁"은 "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
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
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
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
쟁"으로 본다.

④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설치・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 다.

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와 사안별로 주 심위원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부가 조정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의결한 사항은 조정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.

-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정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 여 각 조정부에 1명 이상의 전 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⑥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와 조정부의 구성과 운영, 주심위원 및

전문위원의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44조의11(위원의 제척·기피· 회피)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·의 결에서 제척된다.

- 1.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 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 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오
- 3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, 감정, 법률자문을 한 경우4.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조정위원회에 기 피신청을 할 수 있고, 조정위원 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

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・의결에서 회피할 수있다.

- 제44조의12(분쟁조정의 절차) ① 제44조의10제1항의 분쟁에 대한 조정을 원하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있다.
 -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, 이해관 계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 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는 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 야 한다.
 - ④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,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⑤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

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⑥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⑦ 조정위원회는 제6항의 단서 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 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 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 여야 한다.
- ⑧ 그 밖에 분쟁조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4조의13(분쟁조정 후 통지 등)
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

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거부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.

③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(제2항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) 조정이 성 립되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 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 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 다.

④ 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·날인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한 후단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 및 기명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.

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

제44조의14(분쟁조정의 거부 및 정지) ① 조정위원회는 이중으 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(조정결

<신 설>

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)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②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소가 취하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.

제44조의15(조정의 종결) ① 조정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종결된다.

- 1. 제44조의12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
- 2. 조정위원회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

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 하는 경우

- 3. 제44조의14에 따라 조정위원 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
- 4. 당사자가 제44조의13제2항에따라 지정 기간 내에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- 5. 제44조의13제3항에 따라 조 정이 성립된 경우
- 6.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
-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 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44조의16(임시조치에 대한 직권 조정) ① 제44조의2제8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절차에 회부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에 관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(이하 "직 권조정결정"이라 한다)을 하여 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위원회가

<신 설>

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임시조치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 받은 날을 직권조정절차가 개시 된 날로 본다.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위 원회가 침해된 권리의 신속한 구제 등 긴급히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조정위원 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을 서면(전자문서 를 포함한다)으로 의결할 수 있 다.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 는 제44조의12제3항부터 제5항 까지를 준용할 수 있다.
- ④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(主文)과 결정 이유를 적고 해당조정에 관여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하며,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- ⑤ 제2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 서를 송달받은 당사자는 송달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결정의 내용

을 수락한 것으로 보며, 위 직권 조정결정서 주문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하는 경우 정보통신서 비스 제공자는 직권조정결정서 를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동안 해당 정보에 대한 임시조치를 유지하여야 한다.

- ⑥ 제5항에 따라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조정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.
- ⑦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실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을 수 락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락이 의제되면 직권조정결정은 재판 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. 제44조의17(디지털윤리교육)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 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

비스 이용자의 디지털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(이하 "디지털윤리교육"이라한다)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사업주는

<u>매년 디지털윤리교육을 실시하</u> <u>여야 한다.</u>

- 1. 「초·중등교육법」·「고등 교육법」에 따른 각급 학교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사업장
-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 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제24 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윤 리교육을 담당할 전문기관을 지 정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 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⑤ 그 밖에 디지털윤리교육에 관한 시책, 디지털윤리교육의 내용・방법 및 횟수, 실시 결과의 점검 기준, 공표, 필요한 조치, 교육 지원,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18(온라인피해지원센터)

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 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 한 피해(이하 "온라인 피해"라

<신 설>

한다)에 대한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 라인피해지원센터(이하 "센터"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- ②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온라인 피해상담 및 법률 지

 원
- 2. 온라인 피해정보 삭제 지원
- 3. 제44조의10에 따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 등 유관기관 연계
- 4. 온라인 피해 관련 교육·홍

 보
- 5. 온라인 피해 관련 정보 수집 ·실태조사 및 국제협력
- 6. 온라인 피해상담・피해구제지원 관련 종합시스템 구축・운영
- 7. 온라인 피해 관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
- 8. 그 밖에 온라인 피해를 입은 이용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

- ③ 센터는 관계기관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하기 위 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-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다.
- ⑥ 그 밖에 센터의 업무,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